

제 호

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

전문교육기관	명칭	
	주소	
설치자	성명	
	주소	
	생년월일	
	전화번호	
교육과정명		
지정조건		

「항공안전법」 제7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2조제3항에 따라 위 전문교육기관을 위험물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직인